[별표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 관련)

통합관리 대상 업종	적용 시기
1. 전기업(35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화력 발전업(35113) 나. 기타 발전업(35119)	2017년 1월 1일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2017년 1월 1일
3. 폐기물 처리업(38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나.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2017년 1월 1일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2018년 1월 1일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합성고무 제조업(20301)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2018년 1월 1일
6. 1차 철강 제조업(241)	2018년 1월 1일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8년 1월 1일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2019년 1월 1일
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나.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20131)	2019년 1월 1일
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 나.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20132)	2019년 1월 1일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농약 제조업(20412) 나.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1) 다.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2) 라. 계면활성제 제조업(20431) 마.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 바. 화장품 제조업(20433) 사.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아.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자.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차.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2019년 1월 1일
1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2019년 1월 1일
1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펄프 제조업(1711) 나. 신문용지 제조업(17121) 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라.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마.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2020년 1월 1일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2020년 1월 1일
15.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 나.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 다.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2) 라.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2020년 1월 1일
1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2021년 1월 1일
17. 알콜음료 제조업(111)	2021년 1월 1일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2021년 1월 1일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2021년 1월 1일
20. 반도체 제조업(261)	2021년 1월 1일
2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2021년 1월 1일

비고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2. 하나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종 중 일부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업종의 적용 시기에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하나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적용 시기 중 가장 늦은 시기부터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4. 해당 업종의 적용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허가가 신청된 시점부터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사업장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업장이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표의 각 호의 업종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특성, 오염물질등의 배출특성 및 그 밖에 통합관리와 관련된 특성이 유사하여 환경부장관이 통합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허가가 신청된 시점부터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